

2024

# 산업기술국제협력 한-스페인 공고설명회

2024. 02. 01.

# Contents

- 01 | 사업개요
- 02 | 지원 자격 및 규모
- 03 | 신청 방법 및 절차
- 04 | 평가지표
- 05 | 파트너링 세션 안내
- 06 | 질의 응답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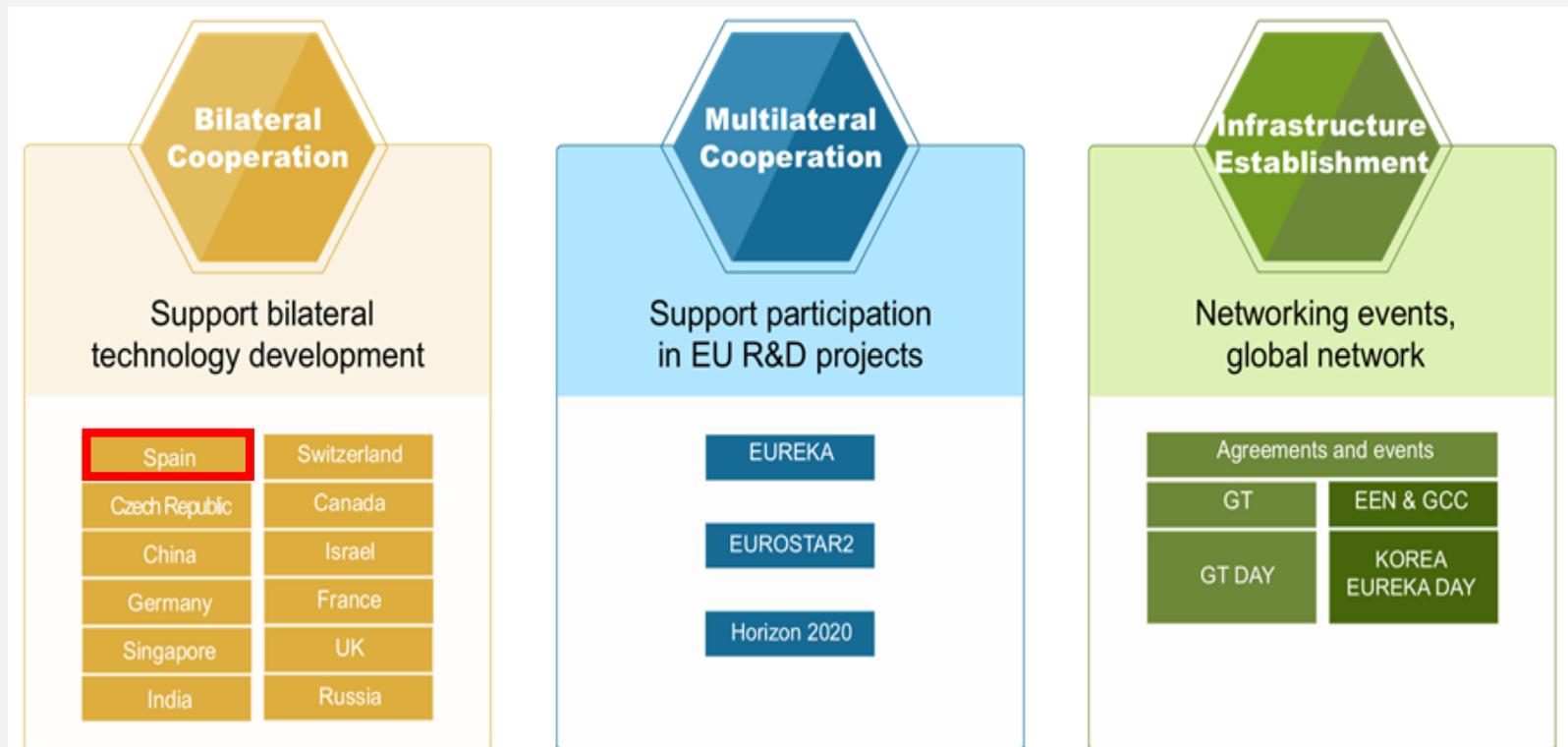
# 01 사업개요

1  
사업  
목적

- 국내 산·학·연과 스페인 우수 R&D 기관과의 전략적 국제공동연구개발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,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

2  
사업  
내용

- 협력 국가(스페인)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,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





## 02 지원자격 및 규모

1 지원  
자격

- 한국과 스페인의 산업 파트너 간 공동 R&D를 위한 기업 주도형 중대형 프로그램

## | 산업기술국제협력(한-스페인) 지원 내용 |

구분		한국	스페인
지원자격	주관기관	중소/중견기업*	Large/Medium sized company
	공동기관	기업/연구소/대학 등 참여 가능	+ SME(필수) * 연구소/대학은 sub-contractor로 참여
지원규모		10억원/年	3,000,000 €/과제
지원기간		3년 이내	
협력분야		1)Renewable Energy, 2)Hydrogen, 3)ESS(Energy Storage)	

- 중소기업이란,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
- 중견기업이란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기업
-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必
- 스페인의 경우, 스페인 컨소시엄 내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



## 03 신청방법 및 절차

1  
신청  
절차

- 접수 마감일은 4월 25일(목) 16:00(KST)로 양국 컨소시엄 모두 마감일을 준수하여 접수 완료 必  
\*양측 접수 마감일 등을 반드시 확인 후 한국과 상대국 양쪽 모두 접수 요망

## | 산업기술국제협력(한-스페인) 신청방법 및 절차 |

연구개발계획서 접수	(KIAT) <a href="http://www.k-pass.kr">www.k-pass.kr</a> (CDTI) <a href="https://sede.cdti.gob.es">https://sede.cdti.gob.es</a>
적격성 피드백	기관 적격성 검토 이후 결과 통보
선정평가	국내평가 및 Peer Review를 통한 접수과제 종합 검토
평가결과 통보	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 확정 및 결과 안내 (~6.7) * 스페인의 경우, 7월 8일까지 국제계약서 제출 必
협약체결 및 사업수행	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프로젝트 개시 (9.1)

\*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

## 2 국내 접수 시 제출서류

서류 유형	제출 대상기관	비고
국문연구개발계획서	주관	
영문연구개발계획서	주관	
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	주관	- 국내외 순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(MoU), 참여확인서(LOI), 국내외 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서명이 날인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中 택 1
사업자 등록증	영리기관	- 국내기업 모두 제출(비영리 면제)
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모두 제출	
개인정보, 과세정보 제공, 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	모두 제출	- 모든 참여연구자 날인 必
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	모두 제출	-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 * "연구전담부서"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
책임자의 재직증명서	주관+공동	
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주관+공동	
회계감사보고서(재무제표)	영리기관	- 상장사의 경우 제출 불필요

\* 관련 양식은 KIAT 홈페이지 → 사업공고 → 통합시행계획 공고문 內 첨부파일 확인

\*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는 해당시 제출

3

공통  
안내

##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

-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**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 및 현물)**으로 구성
-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**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,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**  
-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(현물만 부담 가능)

##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
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

연구개발기관 <sup>1)</sup> 유형	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
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<sup>2)</sup>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% 이하
중견기업 <sup>3)</sup>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% 이하
중소기업 <sup>4)</sup>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% 이하
수요기업 <sup>5)</sup>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% 이하
그 외	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% 이하

- 1) '연구개발기관'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
- 2) '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
- 3) '중견기업'이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1호의 기업임
- 4) '중소기업'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임
- 5) '수요기업'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사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

3  
공통  
사항

-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

연구개발기관 유형	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
중소·중견기업이 아닌 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<b>15%</b> 이상
중견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<b>13%</b> 이상
중소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<b>10%</b> 이상
수요기업	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<b>10%</b> 이상
그 외	필요시 부담

\* 외국 소재 기관(기업, 대학 및 연구소 등)의 경우는 위 표에서 '그 외'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



## 04 평가지표

1  
평가  
지표

## 선정평가지표

평가지표		평가내용	배점
시장확대 가능성	기술개발의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제 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(신시장 창출, 공급망 구축, 신기술 획득 등) (15)</li> <li>기존 기술개발 내용과의 차별성 (5)</li> </ul>	20
기술전략의 타당성	개발목표의 명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제공동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(10)</li> <li>국제공동기술개발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 (10)</li> </ul>	20
	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제공동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(10)</li> <li>국제공동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(5)</li> </ul>	15
	개발목표 설정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과 지표 구성 및 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(10) - 사업화 매출액(수출액 포함), 고용 등 주요 지표 및 목표 수립의 타당성</li> </ul>	10
연구 수행능력의 타당성	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(5)</li> <li>국내외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(10)</li> </ul>	15
시장진출의 타당성 및 효과성	사업화 전략의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(5)</li> <li>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, 경제적 기여도 (5)</li> </ul>	10
	사회·경제적 파급 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개발을 통한 매출(국내매출, 수출) 향상 가능성 및 수입대체효과, 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 (5)</li> </ul>	5
사업비 구성의 적정성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외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(5) - 국가간 예산비율의 적정성</li> </ul>	5
합계			100

\* 선정평가지표는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2  
평가  
지표

## 공동평가지표

평가지표	평가내용	배점
Innovation and R&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Degree of Innovation</li> <li>• Level of technical challenge</li> <li>• Technical achievability</li> </ul>	50
Quality and efficiency of the R&D implementation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Quality of the consortium</li> <li>• Added value through co-operation</li> <li>• Project management and planning</li> <li>• Resonable cost structure</li> </ul>	25
Market and Commercialization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Market size, access, and risk</li> <li>• Competitive advantage</li> <li>• Clear and realistic commercialization plans</li> <li>• Economic, Environmental, and societal impact</li> </ul>	25
합계		100

\* 선정평가지표는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변동 가능

- 양국 기술전문가를 활용한 Peer Review 실시
-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때는 “지원제외” 과제로 분류함.  
단,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및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



# 05 파트너링 세션

1 세션  
일정

- 파트너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기관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파트너링 세션 진행 예정 (2.20(화) 17:00(KST))

프로그램	일정	참여방법	비고
발표자 모집	~ 2.14 (목)	설명회 이후 설문조사 폼 작성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	
파트너링 세션 진행	2.20 (화) 17:00 (KST)	5분 내외 짧은 발표 진행 (기업 소개, 협력 희망 연구분야 등)	영어로 진행
매치메이킹	상시	<a href="https://south-korea-partnering-system.b2match.io/page-3641">https://south-korea-partnering-system.b2match.io/page-3641</a>	



## 06 질의응답

1

KIAT  
CDTI

## ■ 전문기관 담당자

• **KIAT**

- 국제협력사업실 이은지 연구원

Email : [lee.ej@kiat.or.kr](mailto:lee.ej@kiat.or.kr)

Tel : +82-2-6009-3764

• **CDTI**

- Ms. Merced Perez(Spain)

Email : merced.perez@cdti.es

Tel : +34-91-581-0489

- Mr. Jordi Espluga(Korea)

Email : Jordi.espluga@cdti.es

Tel : +82-(0)70-4117-0888

2

■ Q1. 스페인 기업 분류 기준은?

A. 스페인의 기업 유형 분류는 Internal market regulation frame of the EU를 따르며, 하기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함

→ [https://single-market-economy.ec.europa.eu/smes/sme-definition\\_en](https://single-market-economy.ec.europa.eu/smes/sme-definition_en)